

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8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입주요건 확인서류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 10. 28.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, 우편번호 30103)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
(전화 044-201-4868, 팩스 : 044-201-5531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보마당/법령정보/행정예고)